

행정쇄신위, 도서검토제 폐지 결정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정부제1청사 회의실에서 국민제안으로 제출된 건의사항 중 「설계도서신고 및 등록제도 개선」에 대한 회의를 열어 도서 검토제 폐지와 도서신고가 건축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그동안 협회가 현

행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경,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효과적인 설계도서신고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자체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합동 대책회의 개최



합동 대책회의
광경

협회는 지난 10일 협회 강당에서 신정부의 행정·사회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발족된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국민제안으로 상정된 건축행정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처한 자문 위원, 본부임원 그리고 전국 시·도 건축사회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 및 협회의 입장과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쇄신위원회 국민제안으로 상정된 건축행정분야 사항
 - 건축사 면허 및 시험제도 개선
 - 건축 인·허가 및 심의행정 절차 개선
 - 설계도서신고 및 등록제도 개선
 - 건축사 대행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와 감리제도 개선

- 건축사 사무소제도 개선
- 건축교육제도 개선
- 설계경기(현상설계)운영지침 마련
- 협회에서 이견없는 사항
 - 건축 인·허가 및 심의행정 절차 개선
 - 중복, 유사심의절차 통폐합 조정(10단계→3단계)
 - 건축교육제도 개선
 - 특수대학 또는 건축대학 설립 허용
 - 설계 및 현장실무 위주 교과내용 개편
 - 설계경기(현상설계)운영지침 마련
 - 설계경기운영 시행에 관한 규정 마련
 - 위원회 구성시 건축사과 반수 이상 참여
 - 협회에서 건설부에 전의한 사항
 - 건축사 면허 및 시험제도 개선
 - 1차시험 합격 계속 인정
 - 설계능력평가 위주로 시

협

• 현행 면허시험제를 자격 시험제로 변경하여 자격과 면허 분리

-건축사사무소제도 개선

• 건축사사무소의 규모 및 업무구분에 관한 규제조항 폐지

○ 협회에서 반대의견 제시

▶ 설계도서신고 및 등록제도 개선(제안출처 : 국민제안)

-행정쇄신실무위원회('93.7.

19) 심의의견

• 건설부 : 수정동의(폐지 곤란, 보완)

• 연구위원 : 수정동의

• 서울시 : 폐지찬성

• 협회 : 신고절차는 허가와 필요불가분의 절차로서 폐지 절대불가

• 심의결과 : 신고제 폐지 의결(12대 2)

• 이유 : 각종 회비징수 등과 연결되어 부조리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설계도서 신고제도 폐지

-행정쇄신위원회('93.7.23) 심의의견

• 건설부 : 수정동의

• 서울시 : 도서검토 절차는 불필요

• 경기도 : 폐지찬성

• 제안자(진미준) : 도서신고 제도를 근거로 각종 회비징수 차단

• 협회 : 도서신고는 허가 사전절차로서 허가와 불가분의 과정으로 도서신고 제도는 절대 필요

• 심의결과 : 차기위원회 개최시까지 보류하되, 건설부, 제안자, 건축사협회 3자 합의한 보완책 제출

단, 보완조건은 도서신고와 허가와의 고리를 끊을 것, 도서신고와 회비징수와 연계시키지 말 것, 도서검토제는 폐지 할 것

-건설부회의(1차, '93.7.26)

• 협의 : 합의 불일치(건설부, 제안자, 협회)

• 제안자 : 설계도서신고는 사후신고제(7일이내)

• 협회 : 사전신고제 절대 필요

-건설부회의(2차, '93.7.31)

• 협의 : 합의 불일치

• 제안자 : 도서신고는 사후 신고제(7일이내)

• 협회 : 사전신고제 절대 필요

▶ 건축사대행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와 감리제도 개선(제안출처 : 국민제안, 행정쇄신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쇄신위원회 긴급 상정 ('93.7.9) 심의의견

• 건설부 : 폐지반대

• 이유 : 위법 및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

• 서울시 : 폐지찬성

• 심의결과 : 행정쇄신실무 위원회 반송 제심의

-행정쇄신실무위원회('93.7.19) 심의의견

• 건설부 : 폐지반대

• 서울시 : 폐지찬성

• 협회 : 폐지반대

• 이유 : 위법, 부실공사 예가 많은 소형건축물을 부실방지를 위한 분리감리가 필요

• 심의결과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계감리 분리제도는 폐지하되, 동시에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자격등록제도를 도입추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도록 개선

-행정쇄신위원회('93.7.23)

• 심의결과 : 실무위원회 심의결과안대로 의결(폐지)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건, 건설업법 개정(안)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건 등 협회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不実工事防止를 위한 制度改善 政策討論會
— 監理制度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
主 催 子 山 建 築 計 画 研 究 會



정책토론회 광경

子山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에서는 8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오웅석 본협회 회장을 비롯한 박동화 건설부기술관리관, 성백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유태성 대우엔지니어링부사장, 장영수 대우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吳회장은 현행 감리제도에 있어 원천적으로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 건설촉진법에 각기 다른 용어, 역할, 업무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건축사법으로 일괄 법정비가 이루어져야겠으며, 감리보수의 현실화, 감리자의 선택(설계 감리→설계자, 시공감리→설계자불원 또는 능력부재시 타업체, Turn-key→설계자+타업체), 감리자의 권한강화(공사비

지불전·공사중지권), 건설업체의 감리지시 책임의무규정 강화와 불이행시의 처벌, 감리자의 처벌, 시공책임은 시공회사가 지도록하는 내용의 개선안의를 하였다.

이 토론회는 최근 UR과 관련 업계의 자유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건설 업계가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업계는 부단한 기술혁신과 완벽시공,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므로써 건설문화의 백년대계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김수삼 중앙대교수의 사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 연구실장인 이태석 박사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과 참석자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종합감리전문회사 신설—

건설부는 지난 6월 11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감리원의 자격을 등급화하며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감리전문회사를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 그리고 건축감리전

문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기준을 정하고, 종래의 감리원의 자격을 기술사와 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한정하던 것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일정학력이상 경력자가 추가되었다.

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구건축사회, 회원 교양 강좌 개최

대구건축사회(회장 오인준)에서는 지난 7월 12일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회원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양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실시된 강좌는 이종만 본협회 법제위원장의 「사법 및

관련법 해설」과 차석준 한국사회교육연구회 회장의 「신한국 창조와 건축사의 자세」 그리고 양종석 대구직할시장의 「대구시 정방향」에 대한 강연으로 이어졌다.

제주도건축사회, 경찰지서 위문



제주 경찰지서 위문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김수현)에서는 지난 7월 17일 제주 경찰서 우도지서와 이곳 낙도에 주둔하고 있는 전경대를 방문하여 선풍기 등 위문품을 전달,

위문하였다.

한편, 이날 제주도건축사회 회원들은 우도 앞바다에서 친선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도 하였다.

한국건축기술사 토요특강 개최

한국문화재보존진흥협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16일 까지 한국건축사 토요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우리의 건축을 현장감 넘치는 자료를 중심으로 강연하며, 목조건축물이 어떻게 세워지며 설계되는지, 또 중국, 일본 것과 비교를 통한 강의로써 기법적, 기술적인 측면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강의일정은 다음과 같다.

9.11／목조건물조형의 기술발달사(1)/신영훈, 신웅수

9.18／목조건물조형의 기술발달사(2)/신영훈

9.25／단청기법(1)/한석성

9.29／단청기법(2)/한석성

10. 9／목조건물 설계방법／황의수

10.16／목조건물 실측방법／황의수

송파, 21세기 구상전 공모

송파구청에서는 초기백제의 유적지이며, '88서울올림픽의 중심지로서 역사성을 기리고, 주민들에게 비전을 가진 차치구로서 꿈과 낭만의 도시라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21세기 송파의 미래상을 담을 「송파, 21세기 구상전」을 개최한다.

- 공모기간 : '93. 7. 20~'94. 1. 30
- 공모내용 공개설명회 : '93. 9. 3 14시(송파구청 대회의실)
- 참가자격 : 제한없음(건축사, 용역회사, 대학생(전문대포함), 일반시민)
- 작품규격 : 폐널 1.2m×1.2m (3개이내)(모형첨부시 1.5m)

- 공모분야
 -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 유통산업 및 업무공간 증진
 - 문화예술공간 조성
 - 위락 및 레저공간 확충
- 시상내용
 - 대상1점(500만원)
 - 금상4점(300만원)
 - 은상4점(200만원)
 - 동상4점(100만원)
 - 장려상12점(50만원)
- 입상자발표 : '94. 2. 25
- 전시회 개최 : '94. 3. 1~4. 30
- 문의처 : 송파구청 건축과 (전화 : 410-3390~4)

건설기술연수생 일본 파견

-'93. 10~12 연수과정-

대한건설협회(회장 정주영)에서는 「한일건설협력협의회」의 기술협력산업의 일환으로 오는 10~12월중 일본 전국건설연수센터에서 실시되는 「가설공」 과정 등 9개과정에 연수생을 선발, 파견할 계획이다.

이 연수는 국내의 건설기술개발 진흥업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 및 유관단체의 기술 및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의 건설공법을 습득, 국내건설 시

공 현장에서 응용함과 아울러 기술개발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연수과정은 원칙적으로 일본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일본 국내 기술적 및 관리적 직원을 위한 과정으로 강의는 일본어로 진행된다.

연수인원은 각 과정별 5~6명으로 제한한다.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국제부(547-6101, 교환343, 346)

又谷 김희춘회원 별세

지난 7월 24일(토) 오후 5시 33분, 건축계의 원로 김희춘 회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장지는 충남 천안군 풍산공원 영결식은 28일(수) 오전 8시 서울대병원에서 유족과 건축계



김희춘 회원 합동 영결식

○주요 약력

1915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	설지문위원
1937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학과 졸업	1981년~1983년 건설부정책자문위원(주택건축분과위원장)
1953년~198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1982년~1995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설 자문위원장
1964년~1965년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1983년~1985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1974년~1976년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회장	1986년~1993년 (주)정밀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사사무소 고문
1975년~1990년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위원	1992년 건축사시험분과위원회 위원장
1980년~1985년 대한생명보험 63빌딩 건	

★ 국민연금 알고 계십니까 ★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및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퇴되어 생계가 어렵게 될 때에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된다.

3.가입중의 부담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수의 6%를 가입자와 사용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2%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체사업장가입자의 중간치 보수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4.가입자가 받는 혜택

국민연금가입자는 장래에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노령연금을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을 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연금을 받

지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약출료에 이자가 가산된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인 가급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중 개인별 보수에는 임금변동률을 적용하고 연금지급후 연금액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며 기본연금액의 산정시에 전사업장가입자의 보수평균액을 수급권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제분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5. 국민연금기금운용

국민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금급여에 충당하기위한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출료, 기금운용수입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종 휴양시설의 건립과 생활안정기금의 대여등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복지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